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입원 (요양병원 제외)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 관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사용」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 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 험가입금액의 0.5%를 지급함)

- ※ 2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간편심사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속 입원 중에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상이 된 날부터 삭감하지 않습니다.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요양병원 제외)급여금"의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4.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2-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표2-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별첨2 [표 4] 참조

(간편)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1조의3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부표2-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부표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간편)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 보장특약(무배당, 갱신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또는 2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만기의 경우 10년", "20년만기의 경우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 ② 제1-9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1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2-9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1조의3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1.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부표2-2> 참조) 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부표2-3> 참조)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부표2-4> 참조) 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2

-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 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주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 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적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 적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 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 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 차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심장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 시 재수술일 로부터 최대 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 으로 적용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보장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연 간 1회를 한도로 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 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 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⑤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중증질환자[심장질 환]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날" 또는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 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 다.
- ⑥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보장급여금"은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 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여러 번 시행하여 중증 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가 2회 이상 적용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 여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5항 및 제6항 예시]

- ✓ 계약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계약해당일는 매년 1월 1일로 함
- ✓ 아래 (1) ~ (3)의 경우, 각 예시의 경우를 제외한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가 정함

(1)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는 경우

- ✓ 2024년 12월 25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 술을 받음
 - → 2024년 12월 25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

- 되고, 첫 번째 연도(2024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연도에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 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 ✓ 2025년 12월 20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약제투여를 받고,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됨
 - ✓ 2026년 1월 5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음
 - → 2025년 12월 20일에 두 번째 연도(2025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2026년 1월 5일 세 번째 연도(2026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 (3) 동일한 연도 내에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 ✓ 2027년 1월 10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 술을 받음
 - ✓ 2027년 5월 15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약 제투여를 받음
 - →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2027년 1월 10일 또는 2027년 5월 15일 중 1회에 한하여 네 번째 연도(2027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⑧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 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 보장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 적용기간, 수술명, 수술코드, 약제성분명 등 포함),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등),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